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제16조, 제17조)

· 당초 : 감량의무이행계획 → 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규격 변경 및 사용시기 규정(안 제11조)

· 전용봉투 규격 : 3리터, 10리터, 20리터(3종류) → 20리터로 통일

· 전용봉투 사용 시기 : 명절, 김장철 등 다량 배출 시 한시적으로 사용

다. 개별계량 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재 kg당 40원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52원, 2018년 1월 1일부터 60원으로 인상(안 별표 1)

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을 2017년 1월 1일부터 30% 인상 후, 2018년 1월 1일부터 17% 인상하여 총 47% 인상(안 별표 1)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및 과학경제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2016. 9. 20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2)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
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
한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
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
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
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
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20리터만 제작하고, 명절과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때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집 · 운반하여”를 “수집 · 운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를 “영 제8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처리 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또는 발효·발효건조”를 “발효·발효건조”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

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계약서”를 “이 경우 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을 “다음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래”를 “다음”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제9조 관련)

1.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

(단위:원/kg)

2016.12.31.까지	2017.1.1.부터	2018.1.1.부터
40	52	60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전용봉투 가격표

규 격		기간별 판매가격(원)					
봉 투	납부필증 (칩)	2016.12.31까지		2017.1.1부터		2018.1.1부터	
		판매이윤	판매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3리터	3	40	4	52	5	60
	5리터	7	80	9	107	11	125
	10리터			19	214	22	250
	20리터	28	310	36	402	42	470
20리터		28	410	47	530	55	620
	60리터	84	930	104	1,210	126	1,410
	120리터	168	1,860	216	2,410	253	2,820

- 주) 1. 판매소 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 9범위 이하 적용(판매소 이윤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2. 납부필증(칩)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종량제 봉투관련 규정에 준한다.

3. 납부필증(칩)의 규격

가. 색상

부피별	적 용	색 상
3리터	부피단위	노랑색
5리터	"	연두색
10리터	"	주황색
20리터	"	초록색
60리터	"	파란색
120리터	"	분홍색

- 나. 표시내용 : 처리 수수료 납부증명서, 시마크, 구미시장, 용량 및 용도표시
- 다. 위조방지처리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삽입
- 라.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 마. 규격, 색상,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등(제10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구분	공동주택(무계단위)	공동주택(부피단위), 단독주택, 다량배출업소 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
배출일자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격일(토요일 제외)
배출시간	배출일 18시부터 24시까지	좌동
배출장소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기기 설치 장소(주민 불편이 없고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세대주가 지정한 장소나 대문, 업소 앞(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수거·운반일	배출일 다음 날(음식물쓰레기가 50%이상 담겨진 전용용기)	배출일 다음 날(납부필증이 부착된 전용용기)

- 주) 1.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2.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

- 가. 60세대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배출량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단,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상호계약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배출요령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폐식용유,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과일류 : 견과류 껍데기와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 찌꺼기 : 각종 차 류(1회용 포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 타 : 돼지기름, 닭기름, 왕겨, 고추대, 옥수수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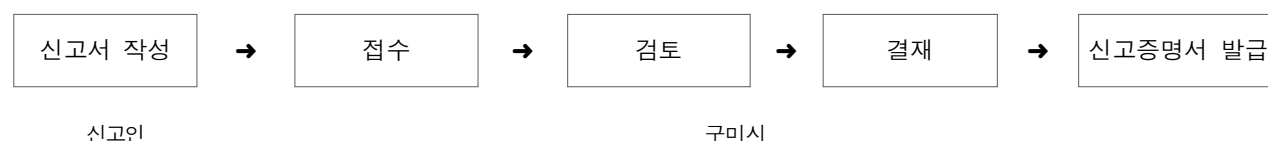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깎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깎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깎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 활용내용				③위탁재 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 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 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 리량	운반자	재 활용 자	재 활용 방법	위탁 재 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 7.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 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⑤ -----
-- 다음 각 호와 --.

1. ~ 3. (현행과 같음)

⑥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 ⑦ (생략)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 4. (생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생략)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②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

-----.

1. -----
---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는 3리터, 10리터, 20리터로 구분 제작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20리터만 제작하고, 명절과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때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 수집·운반하여 -----

-----.

②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 영 제8조-----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 처리하여야 -----.

1. (현행과 같음)

2. -----

----- 발효·발효건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생 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
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
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자
가·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
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
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
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별지 제1호서식-----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
터 1개월 이내-----
----- 신고증명서
를 -----.

2. -----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
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
-----.

3. -----

- 시장-----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u>계약서</u>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 <u>이</u> <u>경우 계약서</u> ----- ----- -----.
4.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u>----- ----- ----- -----.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u>30일</u>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u>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u>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5. ----- ----- ----- -- <u>1개월</u>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 <u>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u> -----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u>각</u>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u>다음 각</u> ----- -----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u>감량의무이행계획</u>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u>아래</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1. ----- ----- ----- ----- -----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u> -----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u>다음</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

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 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 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I.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II.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III.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 선정

소관 실 · 과		청소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주 광 하
	담 당	이 연 우
	담 당 자	박 천 민 (480-5223)